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기 간	출석요구 공무원	요 구 사 항	비 고
'98. 3. 26~ 3. 28(3일간)	○ 군수 및 관계 공무원	○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	

【 3 】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8. 3. 20.

발 의 자 : 이홍규의원외 2인

 발의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
림지역내에서 식품점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
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
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시설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준농림지역안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은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점객업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과 기존 숙박업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기존 균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허용지역의 범위는

- 상수원보호구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500m이외 구역
-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등 경계로부터 30m이외 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부터 100m이외의 구역
- 준용하천으로부터 50m이외의 지역
- 단위부락중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외 지역(단, 20호이상 집단거주 부락내에서의 식품점객업은 예외)

양주군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 소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함은 수도법 제5조에 의거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5. “국도, 지방도, 군도”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의 경계는 도로경계선을 말한다.
6.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7.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을 말한다.
8.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이라 함은 단위부락 중 20호 이상의 가구가 집단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철도 등의 경계”라 함은 철도법 제76조에 의거 가장 바깥쪽 레일 끝을 말한다.

제3조(허용대상 시설) 허용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1항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존 숙박업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과 기존 근

린생 활시설의 용도변경

3. 제2조 제2호에 의한 숙박업
4. 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4조(허용지역 범위) 숙박업소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제2호 시설과 기존 복합건물내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500m 이외의 구역
2.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등 경계로부터 30m이외의 구역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부터 100m 이외의 구역
4. 하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용하천으로부터 50m이외의 지역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로 인입시설 설치가 완료된 구간은 예외로 한다)
 - 가. 개수완료구간 : 제외지 비탈 상단 법선
 - 나. 미개수 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계획구간중 향후 개수할 지역은 개수계획선, 현황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지 비탈 상단 법선
5. 단위부락중 20호 이상 집단거주부락외의 지역
(다만, 20호이상 집단거주부락내에서의 식품접객업은 예외로 한다)
6.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100m 이외의 구역

제5조(허용지역의 적용) ①제4조에 의한 허용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해 적용한다.
②기준 시설물에서 적용하는 거리는 숙박업소 등의 건축외벽선까지의 거리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